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

2026 균형있는 성장, 기초학력 보장 통합 운영 계획



2026. 1.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

2026 균형있는 성장, 기초학력 보장 통합 운영 개요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 목적

○ 기초학력 보장 지원 다중학습안전망 통합 운영으로 기초학력 보장 지원 내실화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단위학교, 교육(지원)청의 책무성 강화

□ 추진 계획

○ **기초학력 진단 내실화**

[기반마련]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진단실행] **국기기초학력지원포털** 기반 체계적인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진단내실화] 맞춤형학업성취도자율평가 연계 기초학력 진단 강화(초3, 중1)
정서·심리·특수 요인 등 진단 활성화

[보정강화]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 보정지도 및 학습이력관리 확대

○ **기초학력 보장 '학교맞춤선택제' 운영**

다중학습 안전망	선택 사업	내용
수업 안	기초학력 협력강사	• 1수업 2교(강)사제를 통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으로 기초학력 미도달 예방 • 교육복지우선사업 연계 교육 취약계층 지원 강화
학교 안	두드림학교	• **(운영유형)** 기본형, 맞춤지원형, 학습튜터형 • **기초학력 통합 지원 체계 구축**으로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 지원 • 저학년 맞춤 지원 및 중학생 학습동기 강화 지원
	학습도약 계절학기	방학(여름, 겨울) 중 학습공백 최소화로 학습결손 누적 예방

※ 2026년 운영 변경 사항

- 2025 학습지원튜터(수업 내) 및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 → 2026「기초학력 협력강사」사업 통합
- 2025 학습지원튜터(학교 안) → 2026「두드림학교(학습튜터형)」사업 통합

□ 기대 효과

○ 체계적인 진단과 학생 맞춤 지원 강화로 기초학력 향상 도모

○ 학생과 학교, 지역 특성에 맞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으로 단위학교 기초학력 보장 운영 내실화 및 기초학력 부진 해소

목 차

1. 목적 ····· 1

2. 근거 ····· 1

3. 추진 방침 ····· 1

4. 세부 추진 계획 ····· 2

□ 기초학력 진단 내실화 ····· 2

□ 기초학력 보장 '학교맞춤선택제' 운영 ····· 6

□ 기초학력 보장 '학교맞춤선택제' 사업 안내 ····· 7

5. 행정 사항 ····· 13

6. 기대효과 ····· 14

※ 참고 ····· 15

1.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최소한의 성취기준 안내 ····· 15
2. 학교맞춤선택제 예산 활용 세부 기준 안내 ····· 16
3. 기초학력 협력강사 강사 기준 및 강사비 적용 기준 ····· 18
4. 학교맞춤선택제 사업 운영 계획서 및 보고서 예시 ····· 20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

2026 균형있는 성장, 기초학력 보장 통합 운영 계획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1 목적

□ 기초학력 통합 지원 체계를 기반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내실화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단위학교, 교육(지원)청 책무성 강화

□ 학습 및 성장의 주요 요인에 집중하여 학생, 학교, 지역에 맞춘 기초학력 향상 추진

2 근거

□ 기초학력보장법(법률 제18458호, 2022.3.25. 시행) 및 동법 시행령

□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경기도조례 제8223호, 2024.10.14., 제정)

□ 2026 경기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2025.12.28.)

3 추진 방침

□ **(진단-보정 내실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기반의 체계적인 기초학력 진단, 맞춤형 보정 학습을 제공하고, 학습이력관리 내실화로 학생의 교육결손 해소 및 기초학력 향상 지원

□ **(다중학습안전망 재구조화)** 기초학력 보장 사업 통합 운영으로 단위학교 기초학력 보장 관련 업무 경감

□ **(공교육 책무성 강화)** 수업안-학교안으로 확장되는 기초학력 보장 다중 학습안전망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청, 단위학교의 책무성 제고

4 세부 추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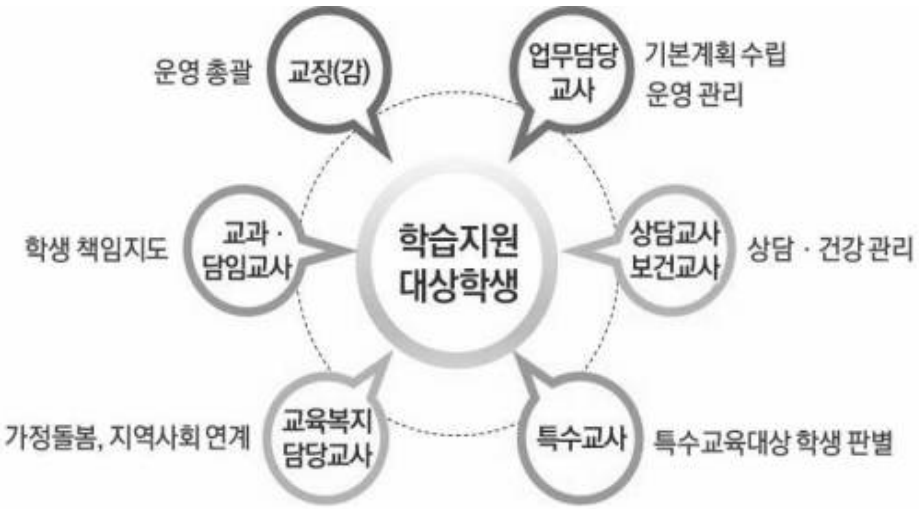
기초학력 진단 내실화

□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1] 구성 및 운영

○ **(목적)** 단위학교 내 학습지원대상학생[2]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기초학력 보장 체계 구축

○ **(구성)** 위원장(학교장)·부위원장(1인) 포함 8인 내외로 구성, 간사(학습지원 담당교원)를 지정하여 협의회 운영

- 학습지원대상학생지원협의회 구성 체계



○ **(운영)** 학기별 1회(학년 초, 학년 말) 이상 개최

- **[필수]** 매 학년도 시작 후 2개월 이내 1회차 협의회 개최 및 학습지원 대상학생 선정 완료
- 입학·편입학·전학 등의 사유로 학습지원대상학생 추가 선정 및 학습지원대상교육 변경사항 등 필요시 추가 운영
- 학교내 위원 구성 및 성격 등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 운영 가능

1)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이 고시하는 구성 및 운영 기준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

2)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기초학력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선정한 학생.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

○ **(역할・내용)**

- 단위학교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 협의・결정
  - 단위학교 기초학력 보장 운영 계획 및 다중학습안전망 구축・운영 계획 수립(학교맞춤선택제 운영)
  -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관리 등
- 체계적인 진단도구 선정, 운영 및 결과 등의 사항 협의・운영 점검
  -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중심의 기초학력 출발점 진단, 향상도검사, 도달도검사, 정서・심리・특수요인 진단 등
- 기초학력 진단 결과 기반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지원방안 마련
  - 기초학력 출발점 진단 결과와 교사의 관찰, 면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 학부모 소통 및 연중 학습이력관리 방안 마련・추진

□ 학습지원담당교원[3] 선정

○ **(목적)** 단위학교 기초학력 보장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정,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으로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향상 지원

○ **(대상 및 시기)** 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년 초

○ **(역할)** ※ 기초학력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된 업무 추진, 직무연수 이수

- 단위학교 기초학력 보장 계획 수립・운영 및 성과관리
- 학습지원대상학생지원협의회 구성・운영 및 지원(‘간사’ 로 활동)
- 기초학력 진단 활동(학년초 출발점 진단, 향상도검사, 도달도검사, 정서・심리・특수요인 진단 등) 계획 수립・운영 및 관리

  [필수] 학생 및 학부모에 기초학력 진단 활동 사전 안내
-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지원 및 학습지원교육 참여(학습이력) 체계적 관리 체계 구축
-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이수(연간 15시간)
- 단위학교 교육공동체 기초학력 보장 역량 강화 운영(연수[4], 기초학력 집중주간, 성과나눔 등)

---

3) 기초학력보장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각 단위학교의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4) 초·중·고등학교 교원(교장, 교감, 비교과 교사 제외)은 2023~2026년 중 15시간의 기초학력 보장 관련 연수 이수

□ 체계적인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 **(목적)**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통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효과적 지원으로 기초학력 향상 도모[5)]

○ **(대상)**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시기)** [출발점 진단] 2026.3. ~ 4. [교과학습 향상도검사] 2026. 6월, 9월, 12월
[3R's 도달도검사] 2026.11월 [정서·심리·특수요인 영역] 연중

○ **(운영)**

- 학교 실정에 맞는 진단도구 선택, 진단(① 또는 ② 중 택1)

①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6)]** 중심의 디지털 기반 지필형 기초학력 진단 활동

② 학교 자체 도구, 교사의 관찰, 면담 등을 활용한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

※ 자체 도구 제작 시 **[참고1]**[16쪽,] **[붙임2]**[별도문서] 기초학력 도달 기준(최소한의 성취기준) 반영 **필수**

- 학생의 학습·정서·행동발달 상황 등 종합적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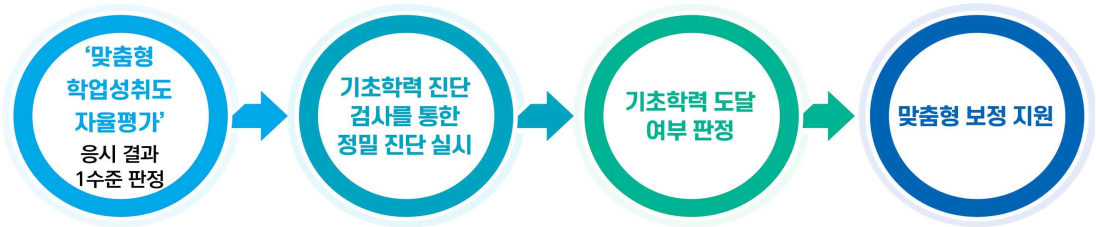
•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활용 종합 진단 실시

• 교사 관찰 및 학부모 상담 등 기초학력 미도달 유발 요인 종합적 진단

·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기초학력 미도달 심층 진단을 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연계 실시(2026. 3. ~ 4월 중)
  - [초3]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로 3R's 진단 대체 가능
  - [중1]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로 교과부진 진단 대체 가능*
    * 중1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결과 1수준 진단 학생➜3R's 진단 실시
·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1~2학년은 학년 초 기초학력(교과, 3R's) 진단활동 실시

- 진단결과를 토대로 정규수업 및 방과후 맞춤형 학습 지원 실시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연계 진단 흐름도(초3, 중1)



5) 기초학력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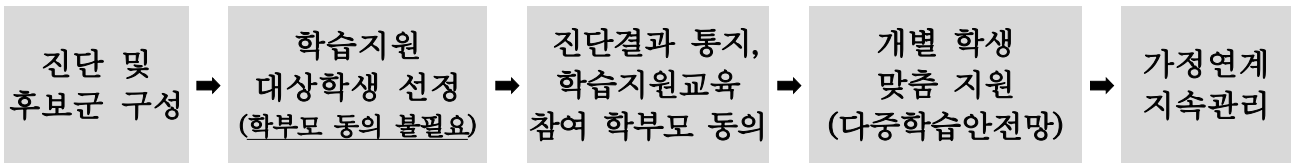
6) 모든 학생의 개별 맞춤형 성장 지원을 위해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개발한 ①기초학력 수준 및 심리정서 진단, ②학생의 학습 이력 연계, ③보정학습 자료 등을 제공하는 포털(https://www.basics.go.kr)

□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보정 지도 내실화

○ **(목적)** 기초학력 진단에 따른 학습지원교육 필요 학생 선정으로 학습결손 조기 발견·해소를 위한 맞춤 학습 지원 체계 마련

○ **(대상)** 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생 중 학습지원교육 필요 학생

○ **(방법)**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보정 활동 절차



-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을 종합적 고려(학부모 동의 불필요)
  ※「2026 경기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12쪽 참고
- 단위학교 기초학력 보장 운영 계획에 따른 학습지원교육 운영
- 기초학력 학습지원시스템을 활용한 보정지도(**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적극 활용)
- 학생별 진단활동 결과 및 학습지원교육 참여 이력 등 체계적 관리
- 외부기관 연계(지역 기초학습지원센터[7], 지역 전문기관 등)
- 지역 기초학습지원센터 운영 사항

주요 사업	내 용
진단	학교에서 학습지원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진단
학습상담	학교로 찾아가는 1:1 맞춤 학습상담 프로그램
한글해득	방학 중 한글해득 프로그램(1~3학년)
전문기관	특수요인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역 전문기관 연계 진단 및 지원

7)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지역 중심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강화한 센터(25개 교육지원청에 설치)

기초학력 보장 ‘학교맞춤선택제[8]’ 운영

□ **(목적)** 기초학력 보장 사업 통합을 통한 단위학교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내실화 지원

□ **(기간)** 2026. 3. ~ 2027. 2.

□ **(방법)** 예산배정, 정산, 결과 보고 간소화를 통한 단위학교 기초학력 업무 경감

□ **‘학교맞춤선택제’ 운영 절차**

기초학력 진단검사	➡	학교여건에 맞는 기초학력 보장 사업 운영	➡	기초학력 보장 학교 교육활동	➡	기초학력 보장 사업 결과 분석
학습지원 대상학생 선정		학교맞춤선택제 운영		학습지원교육 강화		결과 보고 및 정산

□ **‘학교맞춤선택제’ 사업 개요**

다중학습 안전망	선택 사업	내용
수업 안	기초학력 협력강사	• 1수업 2교(강)사제를 통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으로 기초학력 미도달 예방 • 교육복지우선사업 연계 교육 취약계층 지원 강화
학교 안	두드림학교	• **(운영유형)** 기본형, 맞춤지원형, 학습튜터형 • **기초학력 통합 지원 체계 구축**으로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 지원 • 저학년 맞춤 지원 및 중학생 학습동기 강화 지원
	학습도약 계절학기	방학(여름, 겨울) 중 학습공백 최소화로 학습결손 누적 예방

※ 단위학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 선택하여 중복 신청 가능

※ 2026년 운영 변경 사항

- 2025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 → 2026「기초학력 협력강사」사업 통합
- 2025 학습지원튜터(수업 내) → 2026「기초학력 협력강사」사업 통합
- 2025 학습지원튜터(학교 안) → 2026「두드림학교(학습튜터형)」사업 통합

8) 학교맞춤선택제: 기초학력 협력강사, 두드림학교, 학습도약 계절학기 중 단위학교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여 운영함으로써 기초학력 보장 사업의 질을 제고하고 예산배정, 정산, 결과보고 간소화를 통해 업무 경감을 지원하는 경기 기초학력 보장 정책

기초학력 보장 ‘학교맞춤선택제’ 사업 안내

□ [수업 안] 기초학력 협력강사

○ **(운영 기간)** 2026. 3. ~ 12.

○ **(신청 대상)** 초·중·고등학교 중 희망교 1,000교 내외

○ **(지원 규모)**

- 초·중·고등학교 1교당 기초학력 협력강사 최대 2명 지원
- 기초학력 협력강사 1인당 1,000만원 내외 예산 지원(강사수당 및 운영비 등)

○ **(운영 대상)** 학습지원대상학생 또는 기초학력 진단 결과 집중지원 필요 학생

○ **(선정 기준)** 기초학력 부진 극복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학교

-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이 많은 학교
-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적은 교육소외지역에 위치한 학교
- 그 외 기초학력 부진 해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학교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교(사업학교 및 연계학교) 우선 선정

○ **(운영 내용)**

- 지원교당 1명 이상 협력강사 채용(계약제교원 중 ‘강사’ 신분[9])
- 협력 시수: 주당 15시간 미만(1시간 협의 시간 포함, 주 2~5일 시간제 근무)
- 협력 교과: (초등학교) 국어, 수학 / (중·고등학교) 국어, 수학, 영어

○ **(운영 절차)**

① 1단계(신청)	➡	② 2단계(계획수립)	➡	③ 3단계(운영 및 관리)
○ 학교 내 협의를 거쳐 「기초학력 협력강사」 신청		○ 기초학력 협력수업 운영 ○ 교과, 운영 학년 및 학급, 운영 방법, 지원 대상, 지원 프로그램 등 포함		○ 담임(교과)교사와 협력강사 간 협의를 거쳐 협력수업 질 관리 ○ 타 사업과 연계한 기초학력 통합 지원

9) 강사가 근무기간에 대한 재직증명서 발급 요청시 시간강사로 발급

○ **(운영 방법)**

- 강사 채용: 계약제교원 채용 절차[10]를 참고하여 '강사' 신분의 인력 채용

  ※ [참고3][19쪽] 기초학력 협력강사 강사 기준 및 강사비 적용 기준 반영

- 강사 운영: 정규수업 중 협력강사(보조강사) 투입
- 협의 운영: 담임(교과)교사와 협력강사의 협의 정례화로 학습지원대상 학생 맞춤 학습이력관리 지원
- 지도 유형: 맞춤형 지도 및 관리를 위해 **소그룹**(3명 이상) **구성, 운영**
- 지원 영역: 학습결손 및 다양한 기초학력 부족 요인을 고려하여, 학생 맞춤형 학습지도 외에 심리·정서 멘토링 가능
- 타 사업 연계: 방학 중 학습도약 계절학기 연계 투입으로 학기(년) 간 기초학력 보장 지원

○ **(역할)**

- 정규수업 중 집중 지도를 통한 문제해결 지원, 피드백 및 과제관리 등으로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 기초학력 협력강사는 학생 지도를 위한 **단독수업이 불가**하므로 정규수업 시간 중 담임교사와 협력 수업 및 집중지원 대상 학생 지도

- 담임(교과)교사와 정례적인 협의를 통한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 학습이력관리 지원 및 자료 협동 제작

○ **(예산 활용)** 강사비(70% 이상), 기관부담 보험료, 협력강사 연구보조비, 교재·교구비, 협의회비, 교원연수비,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활용

□ [학교 안] 두드림학교

○ **(운영 기간)** 2026. 3월 ~ 2026. 12월

○ **(신청 대상)**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중 희망교(2,500교 내외)

※ 두드림학교의 [기본형]은 신청한 모든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므로 신청여부를 관리자와 사전 협의 후 결정

○ **(운영 대상)** 학습지원대상학생 또는 복합적 요인에 의한 집중지원 필요 학생

10) 2025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2025.1월 개정판). 2026년 지침 시행시 해당 지침 적용

○ **(운영 예산)** 학교당 200만원 ~ 1,400만원(예정)

구분		대상교	운영 내용	지원 예산
기본형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심리·정서·행동적 영역 지원 및 학습 지원	2,000,000원 내외
추가 프로그램	**맞춤지원형**	초·중학교	**[초]** 1~2학년 기초학력 프로그램 **[중]** 학습동기 강화 프로젝트	4,000,000원 내외
	학습튜터형	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방과후 외부강사 활용 교과 학습 집중 지도	8,000,000원 내외

※ 단위학교 신청을 우선으로 고려하되, 2025학년도 학습지원대상학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추후 지원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학교 선택에 따른 두드림학교 지원 예산 예시

❖ A교에서 기본형만 운영 희망시 → 2,000,000원 내외 지원
❖ B교에서 기본형, 맞춤지원형 운영 희망시 → 6,000,000원 내외 지원
❖ C교에서 기본형, 학습튜터형 운영 희망시 → 10,000,000원 내외 지원
❖ D교에서 기본형, 맞춤지원형 및 학습튜터형 운영 희망시 → 14,000,000원 내외 지원
※ 추가프로그램(맞춤지원형, 학습튜터형)은 기본형을 신청한 학교에 한하여 신청 가능

초 1~2학년 맞춤 지도, 중학생 학습동기 강화 지원 필요성

❖ 초등학교 1~2학년은 학습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로, **한글 해득**, **기초 수감각**, 학습 과정에서 **긍정적 자아 인식** 형성이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음.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학습 출발선을 보장하는 공교육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연속성을 둔 **학습 결손 예방 및 조기 발견**에 따른 지원이 필요함.

❖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도달은 초등학교 시기부터 누적된 학습 결손으로 인해 학습 과정에 무기력하거나 학습에 대한 목적의식이 강하지 않은 양상을 보임. 학생 맞춤 학습동기 지원을 통해 **성취 경험**을 늘리고, **심리·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학습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기르고 **기초학력이 향상**되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함.

○ (두드림학교 운영 절차)

① 1단계(신청)	② 2단계(계획수립)	③ 3단계(운영 및 관리)
○ 학교 내 협의를 거쳐 두드림학교 신청(예산 규모, 프로그램 운영 방향 및 방법 등)	○ 학습지원대상학생지원협의회 기반의 기초학력 지원 체계(두드림팀) 구축 ○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기초학력 통합 지원 계획 수립 ○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구성	○ 기초학력 보장 사업 간 연계 활성화로 학생 특성에 최적화된 맞춤형 통합 지원(학습, 정서, 사회성, 학습환경 등) ○ 두드림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및 지속 관리

○ (운영 방법)

- 기반마련: 단위학교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기반의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로, 복합적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학생에게 교감, 담임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등으로 구성된 두드림팀을 중심으로 지도・지원
- 지원대상 선정: 기초학력(3R's, 교과학습) 진단검사 결과, 학생 관찰, 학생·학부모 상담 등 담임교사의 종합적 판단 및 공동체 협의를 통한 두드림학교 지원 대상 학생 선정
- 프로그램 구성: 학생 맞춤 통합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구성</th><th>비고</th></tr>
<tr><td colspan="2">기본형</td><td>기초학력 부족 원인 맞춤 학습코칭·상담, 학력향상 지원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 등</td><td>학교 기초학력 보장 기본 체계로 학습지도만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유의, 내부강사 활용 불가</td></tr>
<tr><td rowspan="2">추가 프로그램</td><td>맞춤 지원</td><td>[초] 1~2학년 맞춤 지도 운영(한글 해득, 기초수리 중심)
<table>
<tr><th>구분</th><th>1학년</th><th>2학년</th></tr>
<tr><td>국어</td><td>한글해득</td><td>읽기 유창성</td></tr>
<tr><td>수학</td><td>기본 수개념 형성</td><td>곱셈구구 이해</td></tr>
</table>
[중] 중학생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동기 강화 프로젝트(맞춤 학습 지도·컨설팅, 심리·정서·행동적 영역 집중 지원) 운영</td><td>해당 학교급 집중 프로그램으로
[초] 1~2학년 학습기초 프로그램
[중] 학습동기 강화 프로그램 적정 운영
내부강사 활용 불가</td></tr>
<tr><td>학습 튜터</td><td>방과 후 외부강사 활용 교과(국어, 수학, 영어) 학습 집중 지도, 학습 컨설팅 등 운영</td><td>내부강사 활용 불가</td></tr>
</table>

○ **(예산 활용)** 학습부진 수준 및 요인 진단비용, 학습지도 강사비, 학습상담, 학습코칭, 학력향상 지원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 교재·교구 구입, 협의회비, 교원연수비, 학생 피복비, 전문기관 연계 및 치료비 등 맞춤형 지원

※ 예산 넘나들이를 통해 기초학력 보장 사업 간 연계한 예산 집행 가능

※ **심리·정서 진단 및 지원, 학생 복지 지원 등**을 위하여 최소 「**기본형**」 **운영비의 50%(100만원) 이상** 예산 편성 및 집행

○ **(두드림강사 활용)** 외부강사 중심 운영

- 학교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충족하는 자(세부 기준은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에서 결정)
- 강사 역할 및 근무 조건

역할	근무 내용
방과 후 학생 교과 지도	• 자격: 늘봄방과후 강사에 준하는 신분(늘봄학교 강사, 방과후학교 강사) • 근무형태 및 조건 - 방과 후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 근로자의 날 근무 급여 가산 적용 없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프리랜서 근로자로 간주함. 그 외 모든 사항은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참조, 반영 • 강사료: 시간(차시)당 40,000원 이내 단위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 단위학교 강사 모집공고 계획에 따라 【공고-서류심사-면접】의 과정 거침

두드림강사 모집시 유의사항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9조, 초·중등교육법 32조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필요

❖ 농어촌학교(읍·면지역 학교) 등 외부강사 채용이 어려운 학교에서는 적정 절차[11]를 거쳐 내부강사 활용 가능

- 특정 영역의 전문가(외부강사)를 활용하여 두드림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강사수당은 단위학교 자율로 결정하되,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에서 관련 협의 후 운영

11) **교직원(내부강사)에게 지급하는 각종 운영수당은 근거없는 편성이 불가**함에 따라 운영 필요성의 근거에 대해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에서 숙의·결정(근거: 「**2026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p.63**)

□ [학교 안] 학습도약 계절학기

○ **(운영 기간)** 2026. 7 ~ 8월(여름방학), 2026. 12. ~ 2027. 2월(겨울방학)

※ 방학 중 학습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여름방학, 겨울방학 모두 운영**을 권장

○ **(신청 대상)**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중 희망교(1,000교 내외)

※ 신청 초과 시 2025학년도 기초학력 미도달학생이 많은 학교 우선 지원

○ **(운영 예산)** 학교당 600만원 내외(강사비, 운영비 등)

○ **(운영 대상)** 학습지원대상학생 및 학업성취 중·하위수준 학생

- 학기 초 기초학력 진단검사(3R's 및 교과) 결과 미도달 학생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1, 2수준 학생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1수준 학생 등

○ **(지도 강사) 학교 내 교원**(여건에 따라 외부강사 포함)

○ **(운영 절차)**

① 1단계(신청)	② 2단계(계획수립)	③ 3단계(운영 및 관리)
○ 학교내 협의를 거쳐 학습도약 계절학기 사업 운영 신청	○ 방학 중 학습지원 교과, 운영학년 및 학급, 운영 방법, 지원 대상, 지원 프로그램 등 포함	○ 참여학생 향상도 모니터링 ○ 참여학생,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 운영 결과 평가 및 사례 공유

○ **(운영 방법)**

- 기초학력과 관련된 교과 중심으로 운영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타 교과 및 학습컨설팅(학습, 진로·진학 상담 등)을 포함하여 방학 중 운영

※ 기초학력 관련 교과: [초등학교] 국어·수학, [중·고등학교] 국어·수학·영어

- 맞춤형 학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의 학습 수준과 프로그램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 횟수, 주기로 운영
- 정확한 진단(기초학력 진단평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등)에 기반한 학생 개별 맞춤형 수업 실시
- 국가기초학력진단포털 등을 활용해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향상도를 진단하고, 학생·학부모 대상 피드백 활성화

- 영어캠프, 독서캠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등 타 사업과 연계 운영으로 낙인효과 방지
- 방학 중 수익자 부담의 방과후(늘봄교실) 수업 지원 불가

○ **(예산 활용)** 강사수당, 운영비(교수학습지원비, 교재구입비 등), 협의회비(업무추진성 경비 등)로 편성 가능
- 지도 날짜 및 시간, 참여 학생 명단, 수업내용, 해당 프로그램 지도교사 확인 등이 기록된 서류를 근거로 강사수당 지급

□ 추진 일정

시기	내용
2026. 1월	◦ 기초학력 보장 통합 계획 수립 ◦ 학교맞춤선택제 안내 및 예산 신청
2026. 2월~3월	◦ 학교맞춤선택제 선정 안내 및 예산 교부
2026. 3월	◦ 상반기 교육지원청 기초학력 보장 사업 담당자 협의
2026. 4월~6월	◦ 상반기 기초학력 보장 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실시
2026. 9월	◦ 하반기 교육지원청 기초학력 보장 사업 담당자 협의
2026. 10월~11월	◦ 하반기 기초학력 보장 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실시
2026. 12월	◦ 학교맞춤선택제 정산 및 결과 제출 안내(추후 별도 안내)

6 기대 효과

□ 기초학력 통합 지원 내실화로 기초학력 향상 지원

□ 학교 맞춤 기초학력 보장 정책으로 공교육 책무성 강화 및 모든 학생의 통합적 성장 지원

□ 기초학력 보장 집중 지원을 통한 기초학력 부진 해소

참고 1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최소한의 성취기준 안내

□ 최소한의 성취기준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 **'기초학력'**이란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기초학력보장법 제2조 제1항)
- ❖ **'최소한의 성취기준'**이란 **국어, 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등(시행령 제2조 제1항)
- ❖ **교육부장관**은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종합계획에 포함(시행령 제2조 제2항)해야 하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의 **세부 내용 규정 가능**(시행령 제2조 제3항)

□ 경기도교육청 「최소한의 성취기준」 해당 영역 및 범위

대상		영역	
		3R's	교과학습
초	1~2학년	한글해득, 읽기 유창성, 기초연산	해당없음
	3학년	초등학교용 3R's	해당없음
	4~6학년	초등학교용 3R's	• **필수: 국어, 수학** • 자율: 영어, 사회, 과학
중	1~3학년	중학교용 3R's	• **필수: 국어, 수학, 영어** • 자율: 사회, 과학
고	1~2학년	고등학교용 3R's	• **필수: 국어, 수학, 영어** • 자율: 사회, 과학

○ 단위학교에서 기초학력 진단도구 자체개발 시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따라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기반한 진단 문항 개발

※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용을 반영한 성취기준은 별도자료 **[붙임] 최소한의 성취기준 및 최소한의 성취기준 Q & A** 필수 확인

참고 2 학교맞춤선택제 예산 활용 세부 기준 안내

□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예산 넘나들이'

○ '기초학력 보장 사업간 예산 넘나들이'란 단위학교가 지원받은 '학교맞춤선택제' 세부사업(기초학력 협력강사, 두드림학교, 학습도약 계절학기) 사업별 운영비의 30% 이내에서 지원받은 사업 간 융통성을 둔 예산 집행(미지원 사업으로의 예산 넘나들이 불가)

예) 기초학력 보장 사업간 예산 넘나들이' 사례

- A교가 기초학력 협력강사 1,000만원, 두드림학교 600만원을 지원받아 두드림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초학력 협력강사에서 최대 300만원(기초학력 협력강사 예산의 30%)의 예산을 두드림학교로 넘겨 운영 가능.
- 이때, 예산 넘나들이는 단위학교가 **지원받은 사업 간에만 가능**하므로 A교는 학습도약 계절학기를 위한 예산 넘나들이를 할 수 없음.

○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는 학습지원대상학생 및 단위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간 예산 넘나들이 방법에 대해 숙의·결정·점검

□ '학교맞춤선택제' 세부사업별 예산 활용 세부 사항

세부사업구분	내용
공통사항	• 강사수당, 운영비(교수학습지원비, 교재·교구구입비 등), 협의회비(업무추진성 경비 등)로 편성 가능 - 사업 목적에서 벗어나는 시설설치 및 기자재 구입, (해외)연수비, 관리수당, 기초학력 사업과 연관성 없는 부교재 일괄구입, 사교육비 지원 등의 예산 운용 불가. 일반학생을 포함한 과다한 예산 운영 지양(소규모 학교는 제한적 운영 가능) • 각 사업별 특정 예산 항목에 대한 내용 이외의 예산 항목 및 사용 비율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 가능 • **학교급별 1차시 운영시간 기준:**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세부사업구분	내용
기초학력 협력강사	• **예산활용:** 강사비(70% 이상), 기관부담 보험료, 협력강사 연구보조비, 교재·교구비, 협의회비(5% 이내), 교원연수비,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활용 • **강사료:** 협력수업 학생지도 및 협의회 참석에 대하여 **차시당 26,000원(가호), 24,000원(나호), 22,000원(다호)** ※ 근거: 2025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p.14(2026년 지침 시행시 현행화 요망) • **기관부담보험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가입시 가입에 따른 기관부담보험료 지출에 활용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홈페이지에서 변동사항 확인 요망 • **협의회비:** 예산의 5% 이내
두드림학교	• **예산활용**: 학습부진 수준 및 요인 진단비용(전문기관 진단비, 에듀테크 활용 진단도구 사용비 등), 학습지도 강사비, 학습상담, 학습코칭, 학력향상 지원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 교재·교구 구입, 협의회비, 교원연수비, 학생 피복비, 전문기관 연계 및 치료비 등 **맞춤형 지원** • **심리·정서 진단 및 지원, 학생 복지 지원 등**을 위하여 **최소 「기본형」 운영비의 50%(100만원) 이상**의 예산 편성 및 집행 • **강사료**: 정규수업 후 · 방학 중 교과 보충수업 지도시 **차시당 4만원 이하** • **협의회비:** 예산의 10% 이내(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기반의 단위학교 기초학력 보장 운영을 위해 타 사업 대비 협의회비가 상향조정됨)
학습도약 계절학기	• **예산활용:** 강사수당, 운영비(교수학습지원비, 교재·교구구입비 등), 협의회비(업무추진성 경비 등)로 편성 • **강사료:** 방학 중 교과 보충수업을 지도하는 프로그램 차시당 4만원 이하 • **협의회비:** 예산의 5% 이내

참고 3 기초학력 협력강사 강사 기준 및 강사비 적용 기준

□ 강사 기준

○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교원 자격증 소지자 및 초·중등교육법상 '강사'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2, '강사'자격 기준 등에 따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2, '강사'자격 기준 : ①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②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③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④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신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①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제①항에 따른 '강사'

○ 근무 형태 및 조건

- 주당 15시간 이내 기준으로 주2~5일 시간제 근무(협의회 시간 포함)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과 제60조(연차 유급휴가) 등 미적용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

- 국민연금 및 4대보험 적용 필수 확인

종류	자격	보험료	보험담당기관
국민연금	○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의무가입 - 기간제교원: 당연 가입 - 1개월 이상 강사: 가입 가능 ※ 제외: 1개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 기준소득월액의 9% - 기관: 4.5% - 본인: 4.5%	국민연금공단 (1355)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보험	○ 상시 1인 이상 사업장 의무가입 - 기간제교원: 당연 가입 - 강사: 1월 이상 임용의 경우 가입 가능 ※ 제외: 1개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5.99%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 (본인 3.275%)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종류	자격	보험료	보험담당기관
고용보험	○ 1인 이상의 근로자 사업장 - 기간제교원: 당연 가입 - 강사: **부분 가입*** ※ 제외: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1주간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보수월액의 1.5% - 기관: 0.85% - 본인: 0.65%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산재보험	○ 1인 이상의 사업장 - 기간제교원, 강사: **당연 가입**	○ 전액 기관부담 - 업종별로 상이함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위 자료는 2025년 기준으로, 2026「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반드시 참조

※ 기초학력 협력강사가 한 학교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 필요

- 고용만료 시 1개월 이내 고용보험 상실 신고(학교 행정실 협조)
-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급여 가산 적용. 기타 근무조건은 근로기준 등 노동관계법령 준용

□ 강사비 적용 기준

구분	수당단가	적용기준
가호	26,000원	1. 도서벽지, 면단위 소재지 학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자격증 관련 업무)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호	24,000원	1. 읍단위 소재지 학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3. 채용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채용분야와 동일한 업무)의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분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당해분야(자격증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호	22,000원	1. 시지역 이상 소재지 학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자격증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위 자료는 2025년 기준으로 2026「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반드시 참조

참고 4 **학교맞춤선택제 사업 운영 계획서 및 보고서 예시**

※ 「2026 경기 기초학력 보장 학습지원담당교원 업무도움자료」를 참고하여 학교상황에 맞게 변경 활용

□ 운영 계획서

2026 학교맞춤선택제 운영계획서

○○학교

Ⅰ 목적 및 필요성

○ 기초학력 보장 사업 운영을 통한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내실화

○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 지도를 통한 성장 지원

Ⅱ 실태분석

○ 2026학년도 학년초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전체학생수	3R's 미도달 학생수(명)				교과 미도달 학생수(명)			
	읽기	쓰기	셈하기	계	국어	수학	영어	계

Ⅲ 세부 운영 계획

▌기초학력 협력강사 운영 *(없으면 생략)*

1. 기초학력 협력강사 운영 개요

□ 지원 대상 및 교과: ○~○학년, 국어, 수학

□ 지원 시간: 학급별 주당 ○시간

□ 협력강사 근무 내용

○ 초1~6학년 국어, 수학 시간 담임교사와 협력수업 또는 보조수업(수업 보조) 실시 등

❖ 담임교사와의 수업 협의 및 긍정적 협력관계 구축
❖ 학생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피드백과 보정 지원
❖ 모둠 활동 및 수업 중 과제 점검, 과정중심평가 등 협력 지원
❖ 학생과의 긍정적 관계 맺기를 통한 칭찬, 격려 등 학습 동기 부여

※ 해당 수업은 담임교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되, 모든 학생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강사의 세부 역할 등은 담임교사가 정할 수 있음(협력강사 단독 수업 불가)

○ 협력수업 등을 위한 담임교사와 수업 협의, 학년 협의회 참석

-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지원을 위한 전략 및 협력수업 등 협의, 협력강사 활동 일지 작성 등

□ 협력수업 시간표

○ 협력수업 시간표는 학년 배정 및 협력강사 선발 후 협의하여 별도 계획으로 편성

- (초등) 국어, 수학, (중등) 국어, 수학, 영어 교과 지원을 기본 방향으로 하되, 해당 학년 정규교육과정 내 특별 수요를 반영한 탄력적 지원 가능

□ 협력강사 운영 모델

○ 지도교사와 협력강사가 협의하여 일반지원 모델, 개별지원 모델 적용 방안을 운영하되, 특정 모델 고착 운영을 지양하고 수업내용 및 학습지원대상학생 여건에 맞는 모델 적용

※ 협력수업 모델 유형은 수업의 진행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가능
(예: 개별지원 수업 진행 중 모둠활동이 진행되면 일반지원 수업으로 변환)

□ 협력수업 협의회 운영

○ 학생 이해 및 학습지원대상학생 협력 지원 피드백, 국어, 수학 교과 수업 방법 협의, 학습자료 제작 등을 위한 동학년 단위의 협력수업 주 1회(1시간 이내) 운영

2. 기초학력 협력강사 채용

□ 추진 절차

○ 경기도교육청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준용(시간강사 채용 절차에 준하여 채용)

○ 추진 절차 및 일정*(예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모집 공고 ⇨ 대상자 선정 및 심사 ⇨ 학교장 계약

구분	일자	비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026.○○.○○.	강사 채용에 대한 심의가 아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심의
채용 공고	2026.○○.○○.	학교 홈페이지, 교육청 홈페이지
원서 접수 기간	2026.○○.○○.~○○.○○	5일 이상
서류 심사	2026.○○.○○.~○○.○○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서류심사
면접 대상자 통보	2026.○○.○○. 00:00 이후	개별 통보(문자 또는 유선)
면접 심사	2026.○○.○○.~○○.○○	본교 지정장소

□ 강사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교원 자격증 소지자 및 초·중등교육법상 ‘강사’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2, ‘강사’ 자격 기준 등에 따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2, ‘강사’자격 기준: ①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②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③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④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강사 신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①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제①항에 따른 “강사”

□ 근무 형태 및 조건

○ 주당 15시간 이내 기준으로 주2~5일 시간제 근무(협의회 시간 포함)

-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과 제60조(연차 유급휴가) 등 미적용
- 국민연금 및 4대보험 적용 권장(산재보험 당연 가입)
- 고용만료 시 1개월 이내 고용보험 상실 신고(학교 행정실 협조)
-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급여 가산 적용

○ 근무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용하고, 협력수업 학생 지도 및 협의회 참석에 대하여 시간당 강사료 ○○,000원 지급

- 강사료: 시간(차시)당 다호 22,000원/ 나호 24,000원/ 가호 2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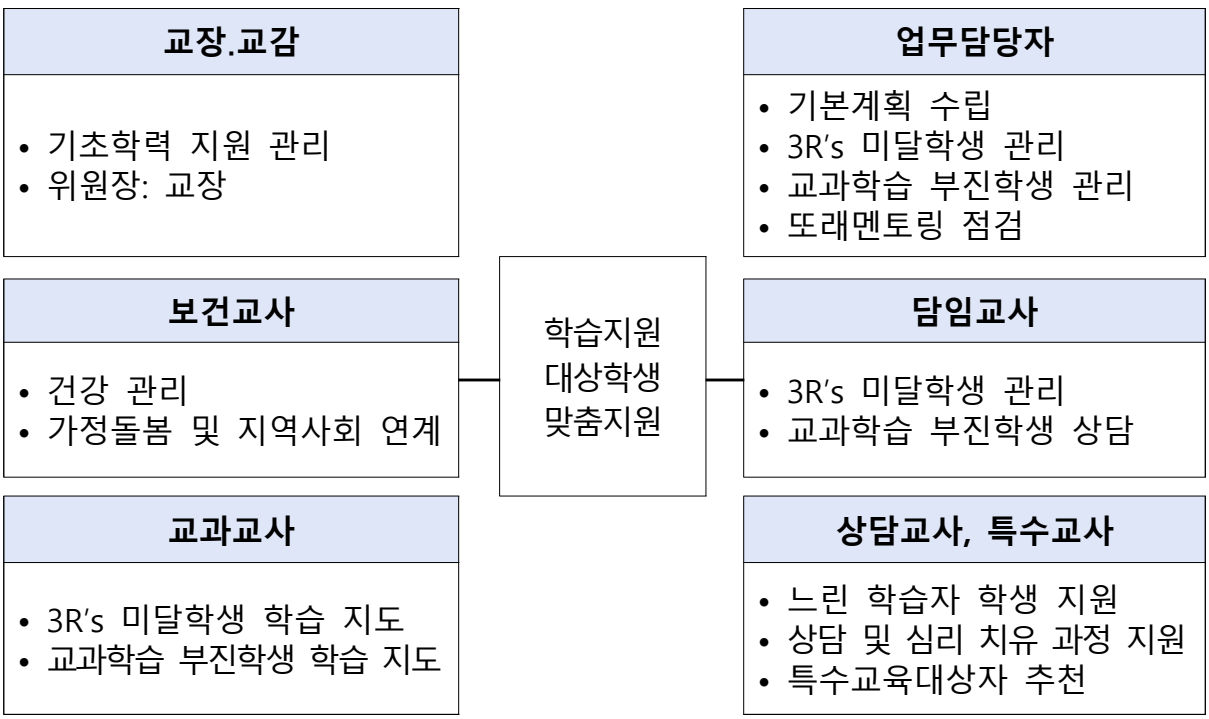
▌두드림학교 *(없으면 생략)*

1.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기반의 두드림팀 구성

□

○

-



2. 두드림 프로그램 운영

□ 기본 프로그램

○

-

○

-

□ 맞춤지원 프로그램

○

-

○

-

□ 학습튜터 프로그램

○

-

○

-

3. 두드림 강사 채용 운영

□ 추진 절차

○ 추진 절차 및 일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모집 공고 ⇨ 대상자 선정 및 심사 ⇨ 학교장 계약

구분	일자	비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026.○○.○○.	강사 채용에 대한 심의가 아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심의
채용 공고	2026.○○.○○.	학교 홈페이지, 교육청 홈페이지
원서 접수 기간	2026.○○.○○.~○○.○○	5일 이상
서류 심사	2026.○○.○○.~○○.○○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서류심사
면접 대상자 통보	2026.○○.○○. 00:00 이후	개별 통보(문자 또는 유선)
면접 심사	2026.○○.○○.~○○.○○	본교 지정장소

□ 두드림 강사 자격

○ 교원자격 소지자, 교·사대생 등 예비교원 대학생, 기타 역량이 풍부하여 학습지도 및 상담 등이 가능한 자

□ 강사 신분

역할	근무 내용
방과 후 학생 교과 지도	• 자격: 방과후 강사에 준하는 신분(늘봄학교 강사) • 근무형태 및 조건 - 방과 후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 근로자의 날 근무 급여 가산 적용 없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프리랜서 근로자로 간주함. 그 외 모든 사항은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 참조, 반영 • 강사료: 시간(차시)당 40,000원 이내 단위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4. 두드림 프로그램 지원 학생

순	프로그램명	학년	반	학생명	학생 학부모동의	연락처	특기사항
1					*O*	*학생:* *학부모:*	*다문화*
2							
3							
4							

▌학습도약 계절학기 *(없으면 생략. 학교사정에 따라 별도 세부 계획 수립)*

1. 방학 중 기초학력 미도달학생 지원 계획

□ 2026학년도 1차 향상도 진단검사 결과

전체 학생수	학년초 교과 미도달 학생수(명)				1차 향상도 진단검사 결과(명)			
	국어	수학	영어	계	국어	수학	영어	계
					[도달] [미도달]	[도달] [미도달]	[도달] [미도달]	[도달] [미도달]

○

-

□ 여름 학습도약 계절학기 운영 개요

○ 운영기간: 2026.○.○○~○.○○ (○일간)

○ 운영대상선정:

-

○ 운영내용

-

□ 겨울 학습도약 계절학기 운영 개요

○ 운영기간: 2026.○○.○○~○○.○○ (○일간)

○ 운영대상선정:

-

○ 운영내용

-

2. 방학 중 학습도약 계절학기 세부 운영 계획

□ 여름 학습도약 계절학기 운영 계획

○

-

□ 겨울 학습도약 계절학기 운영 계획

○

-

3. 방학 중 학습도약 계절학기 프로그램 지원 학생

순	학년	반	학생명	지원 정보	학생·학부모동의	연락처	특기사항
1				*수학, 월·목요일*	*○*	*학생: 학부모:*	*다문화*
2							
3							
4							

Ⅳ 예산 활용 계획

(단위 : 천원)

사업	항 목	내 용	예산액	소요예상액
기초학력 협력강사	강사비	한글문해력집중반 강사비 기초수리력향상반 강사비 ⋮	5,000 3,000 ⋮	5,000 3,000 ⋮
	교재비			
두드림학교	강사비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강사비 초1학년 한글해득 프로그램 운영비 ⋮	280 1,200 ⋮	280 1,200 ⋮
	협의회비			
	기타운영비	심리검사비		
학습도약 계절학기	강사비			
	교재비			
총 계				

Ⅴ 기대효과

○ 기초학력 보장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학력 향상 도모

○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지원으로 책임 있는 공교육 실현

□ 운영 보고서

2026 학교맞춤선택제 운영 보고서

○○학교

Ⅰ 목적 및 필요성

○

○

Ⅱ 실태분석

○

○

○

Ⅲ 운영 내용

▌기초학력 협력강사 *(없으면 생략)*

○

-

○

-

▌두드림학교 *(없으면 생략)*

○

-

○

-

▌학습도약 계절학기 *(없으면 생략)*

○

-

○

-

Ⅳ 운영 성과

❍

❍

❍

Ⅴ 예산 활용

❍ *주 예산 활용 영역에 따른 활용 현황*
(예: 인건비, 교재비, 간식비 등 기술. 세부 내용은 정산서에 작성)

❍ *예산 넘나들이 해당 기술(해당없음 시 생략)*

2026 학교맞춤선택제 운영비 정산서

[학교명] [담당자] [연락처]

□ 집행 결과

가. 총괄

(단위: 천원)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잔액	비고
기초학력 협력강사			*0*	
두드림학교			*0*	
학습도약 계절학기			*0*	

※ 미운영 사업의 경우 표 삭제 가능

※ 잔액이 남지 않도록 전액 집행 유의

나. 세부 집행내역

(단위: 천원)

사업	항목	내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기초학력 협력강사	*강사비*	*한글문해력집중반 강사비* *[예산넘나들이] 두드림학교 인건비*	*5,000* *(400)*	*5,400*	
	교재비				
두드림 학교	*강사비*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강사비* *초1학년 한글해득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넘나들이] 기초학력 협력강사 인건비*	*280* *1,200* *(▼400)*	*280* *1,200* *400*	*0*
	협의회비				
	기타운영비				
학습도약 계절학기		⋮			

※ 학교별 운영 현황에 따른 표 변경 가능

※ 예산 넘나들이 현황 포함 작성